

# 세법 워크북

이철재 · 정우승 · 유은종 공저



## TAX LAW WORKBOOK

➕ 추록 : 2024년 3월 15일 발행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법워크북1] (이철재·정우승·유은종) 18판 1쇄

[세법워크북2] (이철재·정우승·유은종) 18판 1쇄

• 주요 내용 :

세법 시행령 확정 및 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추록



# 추 록

## 2024 세법워크북 추록

세법 시행령 확정 및 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추록

- ❑ 이 추록의 발행일 : 2024년 3월 15일
- ❑ 이 추록이 필요한 책
  - 세법워크북 1권 제18판 제1쇄 (이철재·정우승·유은종 공저, 2024. 2. 1. 펴냄)
  - 세법워크북 2권 제18판 제1쇄 (이철재·정우승·유은종 공저, 2024. 2. 2. 펴냄)
- ❑ 이 추록의 주요 내용
  1. 책 출간 후 발견된 정오사항 반영
  2. 책 출간 후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세법 시행령 반영
  3. 책 출간 후 공고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영



## 정오사항

이 정오사항은 실시간으로 출판사와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2024 세법워크북 정오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독자분들의 학습편의를 위해 이 추록에서도 알려드립니다.

### 정오표 2024.2.23. 업데이트 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법인-88	상 7	손금 인정(상여금)*	손금 인정(상여금)
	상 8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삭 제>
법인-99	하 2	1kW를 초과하는	12kW를 초과하는
법인-114	상 2	1기에 접대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기에 지출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1기에 접대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기에 지출한 경우
법인-414	상 2	자산·부채·손익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손익을
부가-38	하 6	1kW를 초과하는	12kW를 초과하는
상중-110	상 13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 정오표 2024.3.13. 업데이트 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법인-117	하 3	박람회 의 입장권	여수세계박람회 의 입장권
법인-205	하 4	보증금, 차입금, 사채 등	보증금, 사채 등
법인-263	상 15	당좌대출이자율 시가로 신고하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지
법인-395	상 7	해당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결손금 공제액* 및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법인-400	상 3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소득-183	상 12	㉞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㉞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II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1.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용이 달라지거나 새로 개정된 부분

아래 내용들은 공포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들과 새로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1쇄 교재에 반영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면	행	중전의 내용	고칠 내용
법인-70	각주6	차감한 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한 금액을
법인-92	하 5	(예) <u>폐수배출부담금</u> , <u>장애인고용부담금</u> <b>개정안</b> )	(예) <u>폐수배출부담금</u> )
법인-186	하 10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 및 <u>배출허용총량</u> :
법인-419	하 9	3)의 ①·②에 해당하지	3)의 ①·②의 요건 <u>모두에</u> 해당하지
소득-57	상 2	농·어민이 <u>부업으로</u> 경영하는	농·어민이 경영하는
소득-230	상 15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u>30세 미만이면</u> 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u>소득이 일정금액*1 이상이고</u>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u>소득이 일정금액*1 이상이고</u> ,
부가-94	하 9	4,800만원 이상 <u>8,000만원 미만인</u> 자	4,800만원 이상인 자
부가-197	상 3	<u>8,000만원(간이과세기준금액)*1</u> 에	<u>1억 4백만원(간이과세기준금액)*1</u> 에 <b>개정</b>
	상 12	8,000만원 이상인	1억 4백만원 이상인
부가-199	상 4	8,000만원	1억 4백만원
부가-200	상 14	8,000만원	1억 4백만원
	상 22	8,000만원	1억 4백만원
	하 6	×2년 8,000만원, ×3년 <u>8,500만원</u> , ×4년 9,000만원	×2년 1억 5백만원, ×3년 <u>1억 6백만원</u> , ×4년 1억 7백만원

#### ◆ p.법인-92 하 1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 ㉞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입장이 다르며, 추후 대법원의 견해가 나오거나 법원세법 법률로 규정되어야 손금 여부가 명확해질 듯하다.

- 기획재정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임(예법안-14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 서울고등법원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임(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p.법인-375 하 1~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④ 간접보유\*1하는 경우 간접보유비율\*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연결가능자법인별로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함

$$\text{간접보유비율} = \frac{\text{연결가능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text{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times \text{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1 간접보유 :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2 간접보유비율 :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

◆ p.소득-92 하 3~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①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 사용자 등(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함 개정
- ① 사용자 등이 개인인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② 사용자 등이 법인인 경우 : 지배주주<sup>9)</sup>(해당 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 p.소득-93 상 7~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중소기업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얻은 이익은 제외한다. 개정
- ①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②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지배주주<sup>12)</sup>(해당 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 p.소득-93 하 5~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sup>14)</sup>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개정

◆ p.소득-121 상 8~1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④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sup>2</sup> 이하의 금액\*<sup>3</sup> 개정

◆ p.소득-122 상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3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개정

(가) 사용자 등의 경우

① 사용자 등이 개인인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② 사용자 등이 법인인 경우 : 지배주주(해당 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 지배주주(해당 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 p.부가-93 상 1~4행 표 왼쪽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하지 않고 개정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p.부가-93 하 1~10행 표 오른쪽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⑧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2025.1.1.부터 시행) 개정
-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함)(2025.1.1.부터 시행)

개정

◆ p.부가-105 하 1~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3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개량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 p.부가-133 상 15~1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③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개정**
- ④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 p.부가-203 상 14~18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예 외	<p>위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3 (2024.7.1.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 <b>개정</b></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li> <li>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li> </ul> </div>
-----	---

◆ p.부가-203 하 1~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3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p.부가-204 하 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3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포기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자는 재적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2024.7.1.부터 시행)
-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p.상증-61 상 11~15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p>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b>개정</b></p> <p>☞ 이 경우에는 아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p>	<p>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실제 소득세액)*1</p>
--	--

◆ p.상증-61 하 1~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4%
5,76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5,76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초과배당금액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초과배당금액 - 10억원) × 45%

◆ p.상증-63 상 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Case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Case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	---

2.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법문구만 정비된 부분

아래 내용들은 공포된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와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고 단순히 법문구만 수정된 부분들입니다. 1쇄의 내용으로도 학습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지만 교재의 내용을 최신 법조문의 내용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정하기 원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 내용들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행	중전의 내용	고칠 내용
법인-57	상 13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u>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u>	<u>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u>
법인-74	하 9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중 “자본 감소로 인하여 <u>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u>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함)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법인-84	상 11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
	상 2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
법인-93	상 6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열거된 법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열거된 법률의 규정에
	각주4	「환경보건법」 <small>개정안</small>	「환경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mall>개정</small>
법인-144	상 12	공구, 기구	공구, <u>규형</u> , 기구
법인-370	하 5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u>합병차익보다 큰 경우 합병차익을 한도로 함</u>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괄호 내용 삭제)
	하 1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법인-371	상 1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u>분할차익보다 큰 경우 분할차익을 한도로 함</u> )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괄호 내용 삭제)
	상 7	분할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차익의 일부를
	상 11	해당하는 금액	상당하는 금액
	상 12	자본잉여금(①)의 금액은 제외)	자본잉여금에 <u>상당하는 금액</u>
국기-57	하 8	세, <u>혼인 증여재산 공제</u> (제53조의2) 및	세 및
국기-58	상 8	그 이후 해당 조건의 <u>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u>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u>
국기-73	상 3	5천만원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국기-76	하 7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u>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u>
	하 5	<u>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u> 국세심사위원회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소득-200	상 6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u>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u>	인적용역을 <u>계속적·반복적으로</u>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
부가-62	하 2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하 1	발행일로부터 90일	발행일부터 90일
상증-39	하 1	납부할세액	<u>자진납부할세액</u>
상증-49	상 9	납부할세액	<u>자진납부할세액</u>

◆ p.법인-93 하 5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text{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frac{\text{열거된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text{배수* - 1}} \times \frac{\text{배수*}}{\text{배수*}}$$

\* 열거된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 p.법인-173 하 1~4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표 ②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p.법인-369 각주 16번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16) 동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주식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 p.법인-371 상 13~1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위 한도금액 규정을 적용할 때 상법에 따라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위 한도금액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p.법인-400 상 10~25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구 분	내 용
①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	<p>해당 연결자법인이 다음의 정산금*을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p> $\text{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times \text{조정 연결세율}$
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	<p>연결모법인이 다음의 정산금*을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p> $\text{결손금 조정세액} \times \frac{\text{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text{총 결손금 공제액}}$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각각 0으로 할 수 있다.

- ①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 ②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주주(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함)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p.법인-396 전부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구 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3
①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math display="block">\text{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times \text{조정 연결세율}</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함)</li> <li>- 비과세소득</li> <li>- 소득공제액</li> </ul> </li> <li>• 조정 연결세율 = <math>\frac{\text{조정 연결산출세액}}{\text{조정 과세표준 상당액}}</math></li> <li>• 조정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 × 법인세율(9~24%)</li> <li>•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li> </ul>
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math display="block">\text{결손금 조정세액} \times \frac{\text{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text{총 결손금 공제액}}</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금 조정세액 =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li> <li>•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 =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li> <li>• 총 결손금 공제액 =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li> </ul>
③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①과 ②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합한 금액

\*1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

- ①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 ②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 ①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 ②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3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3.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으로 할 수 있다.

- ①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 완전지배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의 전부(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주주(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함)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p.소득-60 상 20~2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3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개정**

◆ p.소득-62 상 1~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⑩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

◆ p.소득-67 각주 6)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6) 다만, 다음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공급하는 조제용역 **개정**

◆ p.부가-24 하 1~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음 **개정**

◆ p.부가-84 하 1~4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참고 사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sup>1)</sup>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임대의 범위는 위 본문 1) 및 2)에 따른다(2024.7.1.부터 시행). **개정**